

1. 개정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 및 [별표 2]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·쇼핑백,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. 다만,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 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(안 제1조제2항)
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,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·쇼핑백,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 일 부개정고시안

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,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빨대·젓는 막대”를 “빨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”을 “6월 30”으로 한다.

[별표] 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)대상에서 제외되는 도·소매업종
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현행화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u> [별표2]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<u>2024년 12월 31일</u>까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: 1회용 <u>빨대·젓는 막대</u></p> <p>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2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</p>	<p>제1조(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빨대</u> -----</p> <p>제2조(재검토기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4년 7월 1일</u> -----</p> <p>-----</p>

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 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 6월 30일-----

제3조 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 2024년 7월 1일 -----
----- 6월 30-----

[별표]

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)대상에서 제외되는 도·소매업종

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(세세분류)	업 종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(세세분류)	업 종
45110	자동차 신품 판매업	46313	육류 도매업
45120	중고 자동차 판매업	46314	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
45211	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	46315	신선,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
45212	자동차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	46319	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
45213	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·전자· 정밀 기기 판매업	46321	육류 가공식품 도매업
45219	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	46322	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
45220	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	46324	낙농품 및 동·식물성 유지 도매업
45301	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	46331	주류 도매업
45302	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	46332	비알코올음료 도매업
47711	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	46333	담배 도매업
47712	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	46521	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
47713	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	46611	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
46101	산업용 농·축산물,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	46612	골재,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
46102	음·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	46613	유리 및 창호 도매업
46107	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	46621	배관 및 냉·난방장치 도매업
46109	상품 종합 중개업	46622	철물,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
46201	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	46691	도료 도매업
46202	종자 및 묘목 도매업	46692	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
46203	사료 도매업	46699	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
46204	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	46721	1차 금속제품 도매업
46205	육지동물 및 반려동물 도매업	46722	금속광물 도매업
46209	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	46711	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(세세분류)	업 종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(세세분류)	업 종
46311	과실류 도매업	46712	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
46312	채소류,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	46713	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
46731	염료,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	46593	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
46732	비료 및 농약 도매업	46594	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
46733	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	46595	전기용 기계·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
46739	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	46596	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
46791	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	46599	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
46799	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	47520	가구 소매업
46741	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	47511	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
46742	직물 도매업	47512	공구 소매업
46531	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	47513	벽지,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
46532	건설·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	47721	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
46533	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	47722	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
46539	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	47723	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
46510	컴퓨터 및 주변장치, 소프트웨어 도매업	47851	화초 및 식물 소매업
46591	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	47991	자동판매기 운영업
46592	의료기기 도매업	-	-